



제 435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 관련 대표자·대리인
선임 규정 신설〉

■ 박성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686호)

2026. 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성 소 미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 관련 대표자·대리인 선임 규정 신설	2
IV. 참고자료	6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성훈의원 등 15인
2. 발의연월일 : 2026. 2. 10.
3. 회부연월일 : 2026. 2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및 중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정·중재가 필요한 사건에서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의 대표자 선정 및 조정·중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시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표자의 선정 및 대리인의 선임은 당사자의 절차상 지위와 권리 행사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제도의 체계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분쟁의 조정 및 중재와 관련된 대표자의 선정 및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조정·중재 절차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 관련 대표자·대리인 선임 규정 신설(안 제23조의2 신설)

개정안은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 사건의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3조의2제1항 신설),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변호사로 등록된 자 또는 조정·중재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한정하며(안 제23조의2제2항 신설), 대리인으로 선임된 자가 사건의 당사자를 위해 조정·중재사건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되, 대리권의 범위가 명시된 경우에는 그 범위에 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제3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3조의2(대표자 및 대리인) ① 조정·중재 사건의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은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변호사로 등록된 자 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한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임된 대리인은 사건의 당사자를 위하여 조정·중재 사건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현행	개정안
	있다. 다만, 대리권의 범위가 명시된 경우에는 그 범위에 한한다. ④ 그 밖에 대표자의 선정 및 대리인의 선임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부장관이 고시한다.

현행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 운영세칙」¹⁾은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 절차에서의 대표자 선정 및 대리인 선임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①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²⁾, ②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은 대리인을 통하여 조정·중재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③대리인의 범위를 변호사, 사건의 당사자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사건의 당사자와 동일한 사업체에 소속된 자, 사건의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으로 한정하고, ④대리인은 사건의 당사자를 위하여 조정·중재사건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되, 대리권의 범위가 명시된 경우에는 그 범위에 한하도록 함³⁾.

1) 중기부 고시, 제2024-29호

2)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 운영세칙」

제11조(대표자의 선정 및 변경) ①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장은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대표자 선정·변경통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 운영세칙」

제12조(대리인의 선임) ①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은 대리인을 통하여 조정·중재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대리인이 될 수 없다.

개정안은 하위법령인 고시에서 규정한 대표자 선정과 대리인 선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운영 절차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와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안 제23조의2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은 변호사로 등록된 자 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소속직원으로 한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안 제1항은 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의 대표자 선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대리인 선임과 관련한 조항이 아니므로, 현행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 운영세칙」⁴⁾과 같이 조정·중재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대리인을 통해 조정·중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리인 선임에 관한 별도의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중소벤처기업부는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 관련 대표자 선정 및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

1. 변호사

2. 사건의 당사자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3. 사건의 당사자와 동일한 사업체에 소속된 자

4. 사건의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②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변호사가 아닌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리인은 사건의 당사자를 위하여 조정·중재사건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대리권의 범위가 명시된 경우에는 그 범위에 한한다.

4)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 운영세칙」

제11조(대표자의 선정 및 변경) ①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12조(대리인의 선임) ①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은 대리인을 통하여 조정·중재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대리인이 될 수 없다.

함으로써, 조정·중재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문 의 처

02) 6788-5467

IV. 참고자료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위원회 개요 및 현황

□ 제도개요

- **(목적)** 기업간 기술분쟁 발생 시 조정을 통한 원만한 타협유도, 중재를 통한 신속한 분쟁해소, 분쟁대응 비용지원 등으로 피해기업 구제
- **(지원내용)** 전·현직 판사, 변호사, 기술전문가 등 3~5인으로 구성된 조정부·중재부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중재로 분쟁 해결 지원
 - * (조정) 조정부 도움으로 당사자간 합의를 도출하여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
 - (중재) 당사자간 중재 합의에 의해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부 판정으로 해결
-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소송비용, 손해배상액 산정 비용 지원

< 주요 지원내용 >

지원유형	지원내용	지원금액
조정·중재 대리인 선임비용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한 기업의 법률대리인(변호사) 선임비용 지원 * 조정성립 시 피신청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최대 500만원 지원 * 법원연계 조정성립 시 양 당사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최대 500만원 지원	최대 1,000만원
소송비용	조정 불성립 사건이 소송으로 연계되는 경우, 지원 심사를 거쳐 소송비용 지원	최대 2,000만원
손해배상액 산정 비용	손해배상액 산정 등을 위해 기술평가기관에 기술에 대한 평가 의뢰 및 비용 지원	최대 4,500만원

□ 지원현황

- '15년 이후 총 264건의 접수, 254건 종료, 7건 진행 중(성립률 49.6%)

구분	접수	진행 중	조정현황(종료)						
			조정안 제시			조정안 제시 불가			
			성립	불성립	계	신청인 취하	조정중단*	각하**	계
15년	22	-	3	4	7	1	14	-	15
16년	17	-	6	8	14	2	1	-	3
17년	19	-	2	7	9	3	7	-	10
18년	19	-	3	9	12	-	7	-	7
19년	21	-	2	7	9	1	11	-	12
20년	30	-	6	5	11	-	19	-	19
21년	25	-	10	5	15	-	10	-	10
22년	24	-	9	1	10	1	13	-	14
23년	33	-	12	7	19	1	13	-	14
24년	20	-	4	3	7	-	13	-	13
25년	34	7	3	5	8	-	13	6	19
계	264	7	60	61	121	9	121	6	136
비율(%)	-	-	49.6%	50.4%	100.0%	6.8%	89.5%	3.8%	100.0%

* 조정중단 : 사실확인 어려움, 피신청인 조정의사 없음 등으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종결한 사건

** 각하 : 신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위원장이 각하한 사건